

경주시 공고 제2022-2138호

공 고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경 주 시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4.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법 개정('16.5.29.)으로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 또한 관련 내용 삭제(안 제2조제4항,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제2항)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안 제3조)

다.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지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법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라.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법에서 마련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

마.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하는 단서 신설(안 제8조제2항 단서)

바.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

3. 예고기간 : 2022. 8. 25. ~ 9. 14.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주시장(참조 : 시정새마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779-6588, FAX : 054-760-742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주소 : [38102]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청)

시정새마을과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을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자는”을 “외국인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성명·주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을”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7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p>「주민투표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1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margin-left: 100px;">귀하</p>			
<p>※ 첨부서류 : 증빙자료</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책무) ① ~ ③ (생략)</p> <p>④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u>재외국민 또는 외국인</u>이 주민투표에 참여할</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u>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u>자</u>는 주민투표권이 있다.</p>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u>각호와 같다.</u></p> <p>1. <u>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u></p> <p>2. <u>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u></p> <p>3. <u>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제2조(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외국인</u>----- -----</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u> ----- ----- ----- ----- ----- <u>외국인은</u> ----- -----.</p> <p><삭 제></p>

<신 설>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과 서명 확인)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서명 연월일

②-----
----- .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과 서명 확인) ①-----
----- 성명·주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시장은 생년월일이나 국내거
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
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

③·④ (생략)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
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
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
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
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
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

②----- 생년월일을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공표방법 등) -----

--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

관 계 법 령

■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 2. 12., 2016. 5. 29., 2022. 4.26.>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방법 및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